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49”를 “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8”을 “6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9”를 “62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337”을 “1,325”로 하고, 일반직 계 “1,337”을 “1,3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24”를 “1,312”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식품안전관리 업무(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
2) 의료제품분야 심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8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9</u>	<u>643</u>	-6
•	•	•	
•	•	•	
일반직 계	<u>648</u>	<u>642</u>	-6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9</u>	<u>623</u>	-6
•	•	•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37</u>	<u>1,325</u>	-12
일반직 계	<u>1,337</u>	<u>1,325</u>	-1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24</u>	<u>1,312</u>	-1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4